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내용 안내



ACT INFORMATION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령 : 노동부 제19738호
- 공포일자 : 2006. 11. 23
- 담당부처 : 노동부 고용보험정책팀 (02-2110-7087)
- 전문참고 : 노동부 홈페이지(www.mobab.go.kr → 법률마당 → 최근 제·개정법령)

◎ **제안이유**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건설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감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쉽게 받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수준 상향조정(안 제23조의3제2항)

- (1) 건설 일용근로자의 빈번한 작업장 이동으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교환(ED)에 의한 근로내역확인 신고는 부정확하고 신고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신고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2)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하는 건설업 사업주에 대하여 전자카드 신고실적 및 전자카드리더기 등 장비 구입비용 등을 감인하여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3) 사업주의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확인 신고업무 및 직업안정기관의 신고서 처리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감지원안 제30조의3 신설

- (1) 근로자 수감지원금 등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훈련비용의 사전 부담 등의 원인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 참여율은 매우 낮은 실정임
- (2)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감을 원하는 기간제·시간제·파견제 및 일용직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사전에 부담하지 아니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하고, 동 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자는 훈련기관에 카드를 제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의 신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급하도록 함
- (3)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직무능력이 향상되고 고용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안내

ACT INFORMATION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6-253호
- 입법예고기간 : 2006. 11. 30 ~ 2006. 12. 20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보건정책팀 (02-2110-6296)
- 전문참고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hw.go.kr → 법령모음집 → 입법예고)

◎ **개정사유**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심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와 국민건강증진사업평가 등 기술지원을 전담하는 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실성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납부담보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8004호, 2006. 9. 27 공포)이 개정됨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정책심의위원회·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및 부담금의 납부담보에 관한 내용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2) 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결산 및 평가 등의 심의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의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3)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함.
- (4) 부담금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납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로부터 공급 받을 수 있는 부담금 담보액은 담보물 가액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부보증보험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이상으로 함.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3년이상 계속해서 영위하고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자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 납부담보제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5) 국민건강증진기금도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기획예산처의 심의·조정과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고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예산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또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므로 기존에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를 폐지함.

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강증진기금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를 발급받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제정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내용안내

ACT INFORMATION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 령 : 건설교통부 제19739호
- 공포일자 : 2006. 11. 23
- 담당부처 :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복합도시기획팀 (02-2110-8555)
- 전문참고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d.go.kr → 법률·자료 → 법령자료)

◎ 제안이유 민간기업의 기업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전담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출자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도 전담기업에 대한 출자자격 평가기준으로 인정하며, 현물출자 토지의 공시가격을 모두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 전담기업에 대한 출자자격 완화(안 제4조제4항제2호)

- (1) 현재 민간기업이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전담기업에 출자하기 위하여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투자적정 등급 이상이어야 하는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외국기업의 참여가 어렵고, 출자 의사는 있으나 동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민간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2) 외국기업의 기업도시개발사업에의 참여를 감인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평가또는 기업신용평가 결과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이면 전담기업에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적정 등급 미만의 민간기업도 전담기업의 자본금이 도시조성비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총 자본금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함
- (3) 다양한 민간기업들의 자본과 전문성이 결합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토지 현물출자 인정범위 확대(안 제4조제3항)

- (1) 현재 민간기업이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민간기업이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자기자본확보비용 산정시 공시가격의 50퍼센트만을 자본금으로 인정함으로써기업이 현물출자를 까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초기 자금부담이 가중됨
- (2) 토지 현물출자시 자본금 인정범위를 공시가격의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확대함

다. 사업시행자의 전기시설 설치 범위 축소(안 제31조제3호)

현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전기공급자가 부담하는 전기시설의 설치범위가 개발구역 밖 기간시설로부터 개발구역 안의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전기시설로 하여 전기공급자가 부담하는 전기시설의 설치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함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내용 안내

ACT INFORMATION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 령 : 행정자치부 제357호
- 공포일자 : 2006. 11. 29
- 담당부처 : 소방정책본부 소방제도팀 (02-2100-5330)
- 전문참고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cha.go.kr → 법령정보 → 법령공포)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동식소화기의 점검은 일반인도 육안검사 등 간단한 조작만으로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관계인이 점검장비를 이용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수동식소화기만을 비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표본검사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물기상승을 등을 감안하여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참고사항

구 분		개정전	개정후	시행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작동기능점검 대상	작동기능 점검 대상 제외	2006. 11. 29
교 육 비	1급·공공기관방화관리자	80,000원	20,000원	2007. 1. 1
	2급 방화관리자(정규과정)	64,000원	96,000원	
	2급 방화관리자(면제과정)	48,000원	72,000원	
	납부방법	현금	현금, 계좌입금, 신용카드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안내

ACT INFORMATION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정보통신부 제2006-44호
- 입법예고기간 : 2006. 11. 13 ~ 2006. 12. 04
- 담당부처 : 정보통신부 우편정책팀 (02-2195-1212)
- 전문참고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www.mic.go.kr → u-IT정책포커스 → 법령정보)

○ 개정이유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등 우편물 배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객위주의 배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부가우편역무의 종류에 “휴일배달소포” 및 “착불소포”를 신설하고, 방문접수 우편물의 요금 후납에 대한 이행조건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수취인이 휴일에 배달 받을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휴일배달소포” 및 희망하는 경우 수취인이 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포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착불소포”를 부가우편역무의 종류에 신설함
- 나. 사전계약에 의하여 방문접수 하는 등기소포우편물의 요금후납에 대한 요금납부기간, 담보금의 제공, 계약의 해지 등 이행조건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 등기소포우편물을 “우편요금수취인부담”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환부 불필요” 제도의적용을 배제하여 환부거절 표시 우편물에 대한 취급규정을 명확히 하고 고객의 혼란요인을 제거함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내용 안내

ACT INFORMATION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 령 : 건설교통부 제641 호
- 공포일자 : 2006. 11. 07
- 담당부처 :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 (02-2110-8571)
- 전문참고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d.go.kr → 법률·자료 → 법률자료)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택거래계약에 관하여 주택자금조달계획 등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내용 안내

ACT INFORMATION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령 : 건설교통부 제9726호
- 공포일자 : 2006. 11. 07
- 담당부처 :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 (02-2110-8571)
- 전문참고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d.go.kr → 법률·자료 → 법률자료)

◎ **제안이유**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동의 없이 주택 및 대지에 담보물권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용지기관을 「은행법」상 금융기관 외에 상호저축은행·보험회사 등도 포함되도록 확대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주택의 거래계약 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항목에 자금조달계획 등을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담보물권 등의 설정 대상기관 확대(안 제44조제2항제1호)

- (1)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동의 없이 주택 및 대지에 담보물권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한정됨에 따라 금융기관 사이에 불공정한 경쟁 여건이 조성되는 한편,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자금 등을 융자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선택 폭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 (2) 담보물권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확대함
- (3) 금융기관 사이의 불공정한 경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의 주택거래와 관련된 신고 항목 추가(안 제107조의3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 (1)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 취득자금의 확인 등 실수요자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2)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주택의 거래시 신고하여야 하는 항목에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과 해당 주택에의 입주 여부에 관한 계획을 추가함
- (3)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집값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안내



ACT INFORMATION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건설교통부 제184호
- 입법예고기간 : 2006. 11. 22 ~ 2006. 12. 13
- 담당부처 :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공기업팀 (02-2100-3829)
- 전문참고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 법률정보 → 입법예고/고시)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지방직영기업이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산재평가규정을 삭제
- 나. 지방공기업 시장에 대한 연임 또는 해임근거가 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 연임 또는 해임기준을 규정함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안내



ACT INFORMATION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건설교통부 제 85호
- 입법예고기간 : 2006. 11. 23 ~ 2006. 12. 13
- 담당부처 : 행정자치부 지역 경제공기업팀 (02-2100-3829)
- 전문참고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 법률정보 → 입법예고/고시)

◎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법률에서 시장 경영성과계약 체결을 의무화함에 따라 경영성과계약 체결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
- 나. 지방공사의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준용토록 함